

고 시

서울특별시 종로구고시 제2015-30호

청진구역 제1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(2차) 고시

건설부고시 제428호(1979.11.22)로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최초 지정되고, 서울특별시고시 제1997-339(1997.11.3)호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-365호(2008. 10.16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-157호(2011.6.16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-335호(2011. 11.10), 서울특별시종로구고시 제2012-10호(2012.2. 24), 서울특별시종로구고시 제2012 -16호(2012.3.9), 서울특별시종로구고시 제2014-89호(2014. 10.10), 서울특별시종로구고시 제2014-124호(2014.12.19)로 도시환경정비구역변경지정, 서울특별시종로구고시 제2009-29호 (2009. 05.22)로 사업시행인가고시 되고, 서울특별시종로구고시 제2010-1호(2010.1.22), 서울특별시종로구고시 제2012-26호(2012.4.27)로 사업시행변경인가고시, 서울특별시 종로구고시 제2014-101호(2014.10.24)로 관리처분인가 고시된 종로구 청진동235-1 번지일대(확정지번: 청진동244번지외 6필지) 청진구역 제1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대하여 『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법』 제49조제2항 규정에 따라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하고, 같은법 제49조제3항에 의하여 이를 고시합니다.

2015년 3월 20일

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

1. 사업의 종류 : 도시환경정비사업
2. 사업의 명칭 : 청진구역 제1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
3. 정비사업의 위치 : 종로구 청진동 235-1번지 일대 ※확정지번 : 청진동244번지외 6필지
4. 사업시행면적 : 4,204.3㎡
5.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
 - 가. 사업시행자 : 주식회사 케이티 대표이사 황창규
 - 나.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: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불정로 90 (정자동)
6.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일 : 2015. 3. 20.
7.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요지
 - 가. 대지및 건축시설의 규모(공급계획등)

토지이용현황(㎡)				건축시설의 총규모 및 이용현황				
계	건축시설	정비기반시설		건축규모 (연면적,㎡)	공급계획(연면적,㎡)			
		도로	공원	업무시설	계	토지등 소유자	체비지 (일반분양)	보류시설
4,204.3	3,637.8	566.5	—	51,170.60	51,170.60	24,767.00	26,403.60	—

※ 건축물 층수 및 높이 : 지상25층 지하6층, 높이 110m

나. 신설 또는 폐지하는 정비기반시설의 명세 등 : “별첨”

8. 기타 관계도서 : 생략(종로구청 도시개발과에 비치 ☎2148-2674). 끝.